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홍지광 의원)

의 안 번 호	26-7
------------------	------

발의년월일 : 2026. 1. .

발의자 : 홍지광, 강동오, 권인순,
안미자, 이한동, 장영준,
한선미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감증명서 요구를 최소화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3항)
- 나. 인감증명서 제출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 다. 폐지된 중앙정부 지침을 삭제하고,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2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6. 1. 9. ~ 1.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및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인회가 제출한 자료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중 “**후, 인감증명서 또는**”을 “**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을**”로 한다.

제28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략)</p> <p>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1.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30조 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u></p> <p><u>2. · 3. (생략)</u></p> <p><u><신 설></u></p>	<p>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u><삭 제></u></p> <p><u>1. ·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u></p> <p><u>③ 구청장은 제2항 및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인회가 제출한 자료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u></p>
<p>제27조의3(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u>후</u>, <u>인감증명서</u>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p>	<p>제27조의3(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 ----- ----- ----- ----- <u>후</u>, ----- ----- ----- <u>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u></p>

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물의 철거)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인가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을 -----
-----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최현민
연락처	02-3153-8582